##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507 발의연월일: 2025. 5. 13.

발 의 자:김용민・이성윤・장경태

윤준병 • 문정복 • 김성환

민형배 • 김용만 • 백승아

윤종오 · 서영교 · 황운하

모경종 • 정청래 • 김우영

한준호 • 부승찬 • 정춘생

박균택 • 민병덕 • 강득구

이훈기 · 강경숙 · 문진석

조계원 의원(25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관과 검사는 각자의 판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고 구속하는 등 개개인의 판단으로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 또한 재판에서 법관의 판단과 검사의 수사·기소의 권한은 존중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 권한은 상당히 막강함. 따라서 법관과 검사는 높은 수준의 중립성과 객관성이 필요함.

그러나 법관과 검사 중 사건의 진실과 정의를 외면하고 부정한 목적으로 사건 처리를 하거나, 기득권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등 법치주의를 훼손시킨 사례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적이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이를 명확하게 처벌할 규정이 부재하

고,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인 직무유기, 직권남용죄는 법원의 해석이 지나치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될 수 없음. 더군다나 법관과 검찰조직이 가지고 있는 고질병인 퇴직 판·검사들과 현직자들 사이의 유착 관계로 인해 사건을 불공정하게 처리하는 행위로인해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 신뢰도는 심각한 수준임.

이에, 법관, 검사,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고발 등으로 이미 인지된 사건의 처리를 지연시키는 경우를 별도 규정을 두어 처벌하고 (안 제122조의2 신설), 특정인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들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조작하는 행위, 조작되거나 잘못된 사실관계에 법을 적용 하여 유죄판결을 내리는 행위, 법관이 부당하게 법을 적용하는 행위, 범죄의 혐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고의로 부실하게 기 소하거나 불기소처분하는 행위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왜곡죄를 신 설하고자 함(안 제123조의2 신설).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22조의2(사건처리지연) ① 법관, 검사, 사법경찰관, 기타 재판이나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건 처리를 과도하게 지연시키거나 지연시키도록 지시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② 제1항의 행위를 요구, 청탁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1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23조의2(법왜곡) ① 법관, 중재인, 검사, 사법경찰관, 기타 재판이나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당사자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들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여 적용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묵인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② 인사권자 또는 인사사무를 보조하는 자가 인사 대상자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 ③ 자신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하도록 지시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행위를 요구, 청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

역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 &lt;신 설&gt;</u>	제122조의2(사건처리지연) ① 법
	관, 검사, 사법경찰관, 기타 재
	판이나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
	를 수행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건 처리를 과도하게 지
	연시키거나 지연시키도록 지시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제1항의 행위를 요구, 청탁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u> &lt;신 설&gt;</u>	제123조의2(법왜곡) ① 법관, 중
	재인, 검사, 사법경찰관, 기타
	재판이나 범죄수사에 관한 직
	무를 수행하는 자가 당사자 일
	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들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여 적용
	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묵인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10
	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인사권자 또는 인사사무를
	보조하는 자가 인사 대상자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과

## <u>같다.</u>

- ③ 자신의 지휘, 감독을 받는자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하도록 지시한 자도 제1항의형과 같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행위를 요구, 청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